

국방벤처지원사업 운영 지침 개정(안) 신규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p>제15조(과제수행계획서 제출·접수) ① “사업주관부서”는 기업으로부터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정해진 양식</p>	<p>제15조(과제수행계획서 제출·접수) ① “사업주관부서”는 기업으로부터 <u>지정공모 과제 또는 자유응모과제의</u>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정해진 양식</p>	<p>지정공모과와 자유공모과제의 명확화</p>

국방벤처 운영 요령 개정(안) 신규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p>제2조 (용어정의)</p> <p>1. “국방벤처보육사업”(이하 “벤처보육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이 기품원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벤처센터에 입주(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하거나 사업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적·경영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p> <p>2. “지역벤처센터장”이라 함은 지역벤처센터에 근무하면서 해당 지역벤처센터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p> <p>3. “매니저”라 함은 벤처센터에 근무하면서 해당 벤처센터가 담당하는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을 위하여 기술적 자문, 마케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4. “졸업”이라 함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 또는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입주기업이 벤처센터에서 퇴소하거나 협약기업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 (용어정의)</p> <p>1. “국방벤처보육사업”(이하 “벤처보육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이 <u>기품원과</u>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지역벤처센터에 입주(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하거나 <u>사업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u>(이하“협약기업”이라 한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적·경영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p> <p>2. “지역벤처센터장”이라 함은 지역벤처센터에 근무하면서 해당 지역벤처센터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p> <p>3. “매니저”라 함은 벤처센터에 근무하면서 해당 벤처센터가 담당하는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을 위하여 기술적 자문, 마케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4. “졸업”이라 함은 <u>자립경영 국방사업 참여기반이 구축되었거나</u> 입주계약 또는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지원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u>입주기업이</u> 벤처센터에서 퇴소하거나 협약기업에 대한 지원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p>	<p>○입주는 협약기업에 대한 보육 형태의 일부이므로 협약기업과 등치의 개념으로 기술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음</p> <p>○졸업은 단순히 협약기간이 만료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최초의 사업지원협약의 목적이 달성된 후 지원이 종료되는 것이어야 함</p>
<p>제13조(계약 체결 등)</p> <p>① 회계담당부서는 위원회가 입주 또는 협약을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업과 소정의 계약(별지 2, 3)을 체결한다. 다만, 기품원과 지방자</p>	<p>제13조(입주계약 체결 등)</p> <p>① <u>각 지역벤처센터장은 위원회가 입주 또는 협약을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업과 소정의 계약(별지 2, 3)을 체결한다.</u></p>	<p>○모든 협약기업에 대해 별지3의 협약서는 해당 지역벤처센터장이 체결하고, 입주계약 부분에</p>

<p>치단체 등의 별도 협약에 따라 계약체결 절차 등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p>	<p>② 입주형태의 협약기업에 대해서는 회계담당부서는 위원회가 입주 또는 협약을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업과 소정의 계약(별지 2, 3)을 체결한다. 다만, 기품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별도 협약에 따라 계약체결 절차 등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p>	<p>대해서만 회계담당부서장이 계약을 체결함 ○조항 번호 조정</p>
<p>② 각 지역벤처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벤처센터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협약서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p>	<p>③ 각 지역벤처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벤처센터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협약서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p>	
<p>제14조(계약기간 등)</p> <p>① 입주기간 또는 협약기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하되,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최초 계약기간 포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사업의 미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장 5년을 초과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4조(계약기간 등)</p> <p>① 입주기간 또는 협약기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하되, 매년 1회 연장여부를 검토하여 지속적인 협약이 무의미하거나 보육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는 품질경영위원회 실무” 심의를 거쳐 입주 및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최초 계약기간 포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사업의 미완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장 5년을 초과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입주 또는 협약연장을 위한 빈번한 품질경영실무위원회 개최 ○현실적으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극히 적음.</p>

<p>제15조(지원내용)</p> <p>①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5조(지원내용)</p> <p>①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p>	<p>○ 입주기업도 협약기업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입주기업 삭제</p>
<p>제18조(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p> <p>① 각 지역벤처센터장은 입주기업이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p>	<p>제18조(입주기업의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①</p> <p>각 지역벤처센터장 <u>회계담당부서장은</u> 입주기업이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p>	<p>○ 본 조항은 입주기업에만 해당되는 임대료 및 관리비에 해당되므로 조항 명칭을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회계에 관한 부분은 회계담당부서장이 하도록 변경</p>
<p>②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입주·협약기업의 파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역벤처센터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손상각으로 처리 할 수 있다.</p>	<p>②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입주·협약기업의 파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u>회계담당부서장은 해당지역벤처센터장에게 이를 통보하고</u> 해당 지역벤처센터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손상각으로 처리 할 수 있다.</p>	<p>○ 회계에 관한 부분은 회계담당부서장이 처리하되 종합적인 판단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해당사항을 해당지역벤처센터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변경</p>
<p>제18조(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p> <p>① 각 지역벤처센터장은 입주기업이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p> <p>1. 1개월 미납 : 전자메일 및 유선통화를 통해 대표자에게 납부를 촉구하고, 그 내용 및 대표자의 의견 등을 보육일지에 기록</p> <p>2. 2개월 미납 : 내용증명 우편 방식에 따라 공문으로 납</p>	<p>제18조(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p> <p>① 각 지역벤처센터장은 입주기업이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p> <p>1. <u>2개월 이내 미납</u> : 전자메일 및 유선통화를 통해 대표자에게 납부를 촉구하고, 그 내용 및 대표자의 의견 등을 보육일지에 기록</p> <p>2. <u>3개월 미납</u> : 내용증명 우편 방식에 따라 공문</p>	<p>○ 열악한 중소기업의 특성상 납품/판매시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에 제한을 받는 기간이 존재하여 제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 수시발생</p> <p>○ 따라서 입주기업의 임대보증금범위내(평균 4.5개월)인 3개월</p>

<p>부 촉구</p> <p>3. 3개월 이상 미납 : 퇴거 등 조치</p> <p>②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입주·협약기업의 파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역벤처센터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손상각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으로 납부 촉구</p> <p>3. <u>4개월 이상 미납 : 납부에정확인서 징구 또는 퇴거 등 조치</u></p> <p>②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입주·협약기업의 파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역벤처센터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손상각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까지 미납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납부를 촉구하고</p> <p>○ 4개월 이상 미납인 경우에는 입주기업 확인 등을 통해 납부에 정확인서를 청구하는 구체적 방법을 추가</p>
<p>제19조(컨설팅비용)</p> <p>① 기술지원, 경영지원, 사업비지원 등을 받은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이 기술이전 또는 제품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으로부터 계약서에 따른 컨설팅비용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p>	<p>제19조(컨설팅비용)</p> <p>① 기술지원, 경영지원, 사업비지원 등을 받은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이 기술이전 또는 제품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으로부터 계약서에 따른 컨설팅비용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p>	<p>○ 입주기업도 협약기업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입주기업 삭제</p>
<p>② 사업비 지원을 받은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이 납부해야 할 컨설팅비용은 해당 품목별 매출액의 1퍼센트(상한액 2천만원, 최초 매출 발생시부터 3년간)로 하되,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컨설팅비용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p>	<p>② 사업비 지원을 받은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이 납부해야 할 컨설팅비용은 해당 품목별 매출액의 1퍼센트(상한액 2천만원, 최초 매출 발생시부터 3년간)로 하되,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컨설팅비용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p>	<p>○ 입주기업도 협약기업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입주기업 삭제</p>
<p>③ 사업비지원을 받지 않은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에 대해서도 해당 품목별 매출액의 1퍼센트(상한액 2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컨설팅비용의 지급과</p>	<p>③ 사업비지원을 받지 않은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에 대해서도 해당 품목별 매출액의 1퍼센트(상한액 2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컨설팅비용의 지급과</p>	<p>○ 입주기업도 협약기업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입주기업 삭제</p>

<p>관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관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p>	
<p>④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이 핵심부품국산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기품원 외 다른 주관기관에 일정금액의 비용(기술료·성공부담금·컨설팅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기품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컨설팅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p>	<p>④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이 핵심부품국산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기품원 외 다른 주관기관에 일정금액의 비용(기술료·성공부담금·컨설팅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기품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컨설팅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p>	<p>○입주기업도 협약기업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입주기업 삭제</p>
<p>제20조(중도해지)</p> <p>①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지역벤처센터장은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 또는 사업지원협약의 해지 및 퇴거와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입주 또는 협약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벤처보육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20조(중도해지)</p> <p>①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지역벤처센터장은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 또는 사업지원협약의 해지 및 퇴거와 관련된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입주 또는 협약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벤처보육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입주기업도 협약기업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입주기업 삭제</p>
<p>제21조(졸업)</p> <p>①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시킬 수 있다.</p> <p>1. 기술이나 제품 개발에 성공하였거나 이로 인해 매출액이 발생되어 입주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자</p>	<p>제21조(졸업)</p> <p>①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이 기술이나 제품 개발에 성공하였거나 이로 인해 매출액이 발생되어 국방사업참여 기반이 구축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협약기업은 졸업신청서를</p>	<p>○입주기업도 협약기업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입주기업 삭제 ○졸업 요건을 최초 사업지원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경우로 강화</p>

<p>립경영기반이 구축된 경우 2.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p>	<p>해당 지역벤처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p>	
<p>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으로부터 졸업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역벤처센터장은 졸업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게 졸업 여부를 통보한다.</p>	<p>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으로부터 졸업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역벤처센터장은 졸업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당 기업에게 졸업 여부를 통보한다.</p>	<p>○ 조항 조정 ○ 입주기업도 협약기업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입주기업 삭제 ○ 졸업 여부 판단은 위원회에서 하고, 통보 기일은 심의회 일정을 고려하여 30일 이내로 변경</p>
<p>제23조(사후관리) ① 각 지역벤처센터장은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이 졸업하였다더라도 졸업 전 사후지원을 신청한 경우 해당 기업이 계속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3조(사후관리) ① 각 지역벤처센터장은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이 졸업하였다더라도 졸업 전 사후지원을 신청한 경우 해당 기업이 계속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 입주기업도 협약기업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입주기업 삭제</p>
<p>별지 제1호 서식 첨부 1. 사업계획서(소정양식)10부(원본 1부포함)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해당시) 3. 벤처기업 확인증 사본 1부 또는 신기술보유 관련 서류 사본 1부(해당시) 4.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각 1 통 5. 기타 별첨 입주신청서 첨부서류 ※ 입주 또는 협약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p>	<p>별지 제1호 서식 첨부 1. 사업계획서(소정양식) 3부(원본 1부포함)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해당시) 3. 벤처기업 확인증 사본 1부 또는 신기술보유 관련 서류 사본 1부(해당시) 4.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각 1 통 5. 기타 별첨 입주신청서 첨부서류 ※ 입주 또는 협약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p>	<p>○ 신규 입주/협약선정 심의를 전자심의로 진행함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제출 부담 해소</p>

국방벤처 개발비지원사업 업무 지침(안) 신규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개정사유
명칭 국방벤처개발비지원사업업무지침	명칭 국방벤처개발비지원사업업무지침(지자체 지원금)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수행하는 개발비지원사업임을 명확히 함. * 현 명칭은 중앙정부(방사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국방벤처지원사업과 혼동 우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방벤처운영요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지역벤처센터가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 개발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방벤처운영요령 제15조에 근거하여 지역벤처센터가 <u>지자체의 지원금으로 협약기업에 지원하는</u> 개발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수행하는 개발비 지원사업임을 명확히 함. 방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구분할 필요 있음 ○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으로 구분할 필요 없음. 입주기업도 사업지원 협약을 한 협약 기업에 포함되는 개념임.
제2조 (용어정의) 1.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이라 함은 민수분야 우수 기술을 군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각 지역벤처센터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거나 사업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의미한다.	제2조 (용어정의) 1. “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이라 함은 민수분야 우수 기술을 군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각 지역벤처센터와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거나 사업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의미한다.	○ 입주기업도 사업지원협약을 한 협약기업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이 지침에서는 입주기업을 정의할 필요 없음.
2. “신청기업”이라 함은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 중 개발비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의미한다.	2. “신청기업”이라 함은 입주기업 또는 협약기업 중 개발비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의미한다.	○ 위의 사유로 입주기업 삭제

<p>5. “수행책임자” 이라 함은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신청기업이 위탁 또는 의뢰한 사항이나 신청기업과 협약한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참여기관의 대표자 등 총괄 책임자를 의미한다.</p>	<p>5. “수행책임자” 아라 함은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신청기업이 위탁 또는 의뢰한 사항이나 신청기업과 협약한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참여기관의 대표자 등 총괄 책임자를 의미한다.</p>	<p>○ 맞춤법 정리</p>
<p>8. “착수지원금” 이라 함은 개발비지원사업 협약서 작성 후 지역벤처센터지원금의 50% 이내에서 지역벤처센터가 지원하는 금액을 의미한다.</p>	<p>8. “착수지원금” 이라 함은 개발비지원사업 협약서 작성 후 지역벤처센터지원금의 50% 이내에서 <u>사업착수를 위해</u> 지역벤처센터가 지원하는 금액을 의미한다.</p>	<p>○ 용어정의에서부터 지급액의 상한을 제시할 필요는 없음</p>
<p>제3조(지역벤처센터의 임무) ② 지역벤처센터는 전 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벤처운영요령 제8조에 따라 국방벤처 실무위원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주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비지원사업 대상 과제선정 및 그 지원 금액 결정 2. 개발비지원사업 대상 과제에 대한 중간점검·최종평가 의결 3. 개발비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 회수 여부 및 그 범위 4. 개발비지원사업 대상 과제의 주요 변경 사항 승인 5. 기타 해당 지역벤처센터장의 요청사항 등에 대한 결정 	<p>제3조(지역벤처센터의 임무) ② 지역벤처센터는 전 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벤처운영요령 제8조에 따라 국방벤처 실무위원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주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비지원사업 대상 과제선정 및 그 지원 금액 결정 2. 개발비지원사업 대상 과제에 대한 중간점검·최종평가 의결 3. 개발비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 회수 여부 및 <u>그 범위(별표 00참조)</u> 4. 개발비지원사업 대상 과제의 주요 변경 사항 승인 5. 기타 해당 지역벤처센터장의 요청사항 등에 대한 결정 	<p>○ 지원비를 회수할 경우 그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제시 필요</p> <p>☞ 국방벤처 지원사업 운영규정 별표2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대상 과제 제재등급(제32조 제1항 관련)의 표1.지원사업 과제의 중단, 실패 및 포기 참조</p>

<p>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p> <p>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개발비지원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분야 활용 가능한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민군겸용 등) 2. 국방분야 기술을 민간분야에 활용하는 사업 3. 기타 해당 지자체 또는 지역벤처센터가 추천하는 기술분야 <p>② 개발비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제품 및 구성품, 부품개발비 2. 디자인 및 기술개발비 3. 모형·금형 제작비, 시험평가비 4. 산학연 등 협력지원비 등 	<p>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p> <p>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개발비지원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분야 활용 가능한 기술 및 제품 개발 사업(민군겸용 등) 2. 국방분야 기술을 민간분야에 활용하는 사업 3. 기타 해당 지자체 또는 지역벤처센터가 추천하는 기술분야 <p>② 개발비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제품 및 구성품, 부품개발비 2. 디자인 및 기술개발비 3. 모형·금형 제작비, 시험평가비 4. 산학연 등 협력지원비 5. <u>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인건비</u> 6. <u>참여기관 등 외부기관에 지급하는 용역비</u> 7. <u>회계감사 비용 등</u> 	
<p>제5조(지원사업 실시계획 공고)</p> <p>지역벤처센터장은 사업진행 일정 등이 포함된 개발비지원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벤처운영요령 제15조 소정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제5조(지원사업 실시계획 공고)</p> <p>지역벤처센터장은 사업진행 일정 등이 포함된 개발비지원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벤처운영요령 제15조 소정의 자격을 갖춘 기업 <u>협약기업</u>을 하여 대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p>	<p>○ 요령 제15조에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이 사업은 협약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p> <p>○ 문구 정리</p>

<p>제7조(과제선정)</p> <p>④ 전 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나 총 사업기간이 절반이상 남았고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제선정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p>	<p>제7조(과제선정)</p> <p>④ 전 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나 총 사업기간이 절반이상 남았고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제 선정 대상으로 코려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의 명확화고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임.
<p>제8조(사업지원 통보 및 협약서 작성 등)</p> <p>① 지역벤처센터장은 신청기업 및 그 참여기관에게 사업지원 여부 및 심의회 심의 결과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8조(사업지원 통보 및 협약서 작성 등)</p> <p>① 지역벤처센터장은 신청기업 및 그 참여기관에게 사업지원 여부 및 심의회 심의 결과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는 신청기업으로부터만 받으므로 결과는 신청기업에만 통보하고, 참여기관에는 신청기업을 통해 통보하는 것이 절차상 합리적임
<p>② 지역벤처센터장은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신청기업 및 그 참여기관과 별지 2에 따른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③ 지역벤처센터장은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신청기업 및 그 참여기관과 별지 2에 따른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처리 진행절차 상 항목 순서 조정
<p>③ 신청기업이 지역벤처센터에 신청한 금액과 심의회가 과제선정 시 의결한 지원 결정금액이 다를 경우, 지역벤처센터장은 신청기업에 대하여 지원 결정 금액에 따른 사업비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③② 신청기업이 지역벤처센터에 신청한 금액과 심의회가 과제선정 시 의결한 지원 결정금액이 다를 경우 <u>또는 심의회가 사업계획의 보완 등을 의결하였을 경우</u> 지역벤처센터장은 신청기업에 대하여 지원 결정 금액에 따른 사업비 수정 <u>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을</u> 요구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처리 진행절차 상 항목 순서 조정 ○ 심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의 보완 사항도 반영되어야 함.
<p>제9조(지원금 지급)</p> <p>① 지역벤처센터지원금은 개발비지원사업비의 75% 이내로 하고, 착수지원금과 최종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p>	<p>제9조(지원금 지급)</p> <p>① 지역벤처센터지원금은 개발비지원사업비의 75% 이내로 하고, 착수지원금과 최종지원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지역벤처센터지원금의 지원 총액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한액을 정하는 것이므로 지원과제 수, 예산 과제 규모 등에 따라 보다 폭 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한액 증액 필요

<p>지역벤처센터지원금의 지원 총액은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p>	<p>5천만원 1억원을 한도로 한다.</p>	
<p>제10조(중간점검) ③ 심의회는 중간점검 평가 결과 사업 진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경우 사전 통보 후 신청기업 또는 그 참여기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보충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0조(중간점검) ③④ 심의회는 중간점검 평가 결과 사업 진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된 경우 사전 통보 후 신청기업 또는 그 참여기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보충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 오타 수정</p>
<p>④ 전 항에도 불구하고 중간점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심의회는 개발비지원 금액 변경, 사업기간 연장 또는 사업지원 중단 등 사업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p>	<p>④⑤ 전 항에도 불구하고 중간점검 결과가 미흡할 경우 심의회는 개발비지원 금액 변경, 사업기간 연장 또는 사업지원 중단 등 사업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p>	<p>○ 오타 수정</p>